

	전공학회논문게재연구비지급규정	규정번호	3-5-7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25.03.01.
		개정차수	17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의 연구능력 향상에 필요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공학회 논문게재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칭한다.

제3조(지급대상)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4조(연구형태) 연구비 지급 학술지는 공동연구자수에 상관없이 1편으로 본다.

제5조(연구비 지급기준) ① 연구비 지급 대상 논문은 당해연도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논문 게재 시 소속을 대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지급하며, 총 저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③ 연구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총저자수	1인	2인	3인	4~10인까지
SCI급		1,500,000원	750,000원	500,000원	300,000원
학술진흥재단등재지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100,000원

④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2학기중에 공고한다.

②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논문게재학회지 또는 학회지 게재 예정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추후 논문게재 학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제6조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행정 지원처에 연구비 지급의뢰를 한다.

② 연구비의 지급 여부, 지급시기와 방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제한) ① 교내·외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 받은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1인1편에 한하여 지원하며 이중지원은 불허한다.

③ 국내·외 장단기연수, 연구학기, 산업체연수 종료후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실적물(논문, 저서,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연구비 지원 학회지) 연구비 지원 대상 학회지는 전공과 관련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SCI급(SCI(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SCOPUS) 등재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